##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9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김남희·김용민·김 윤

권칠승 • 백승아 • 임미애

김한규 · 장종태 · 장철민

김남근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곧 성착취 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 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 다. 오프라인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 2).
- 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8조).
- 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범죄로 확대함(안 제47조의2).

#### 법률 제 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착취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제6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를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행위의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45조제2호 및 제3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 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착취 피 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제 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 까지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 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 소년 성착취"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성 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각각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9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 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제57조제3항제5호의2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 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는 이 법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 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u>	4.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u>
<u>행위</u> "란 아동·청소년, <u>아동</u>	<u>하는 행위아동</u>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	·청소년의 성(性)을 착취하
<u>위</u> 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u>는 행위</u>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	
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	
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6의2. "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u>	6의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u>
<u>년</u> "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u>년</u>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	15조의2
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 9. (생략)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행위</u>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 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 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 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 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② (생략)

제13조(<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u>는 행위 등) ①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

②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u>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 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
7. ~ 9. (현행과 같음)
제12조(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u>
하는 행위
<u> 역 는 행                                 </u>
<u>.</u>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
취하는 행위 등) ① 아동・청
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
<u> </u>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
<u>하기 위하여</u>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 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소년으로 하여금 <u>아동·청소</u> 선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 방이 되게 한 자
-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 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 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u>아</u> 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u>아동·</u>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u>아</u>
   <u>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
   <u>의 상대방</u>이 되도록 유인·권
   유한 자
- ② (생략)
-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

		고행위 등) ①
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	1.	
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         3	2.	<u>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u> <u>대상</u>
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         3.		
의 대상       4	3.	
의 대상       4		<u>아동·</u> 천소녀의 선은 찬취하는 해외
<u>행위의 대상</u>		<u>의 대상</u>
② (현행과 같음)		
② 시도. 처스너이 서으 차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④ (생략)

-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를 업으로 하는 자
  -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u>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 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 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3. (생략)
  - 4. 영업으로 <u>아동·청소년의 성</u> 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 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하는 행위의 대상</u>
④ (현행과 같음)
∥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
는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
<u>는 행위</u>
3. (현행과 같음)
4 <u>아동·청소년의 성</u>
을 착취하는 행위
②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u>아동·청소년의 성</u>
   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또는 강요한 자
-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u>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3.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u> <u>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 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생 략)
- ③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u> <u>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 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u>아동·청소년의 성</u>
을 착취하는 행위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u>
는 행위
3.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u>
 는 행위
4. (현행과 같음)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
<u>하는 행위</u>
·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u>정보통신망 또는</u>
<u> </u>
그 커커 항답된 6 이익
·

- 1. 2. (생략)
-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 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 로 처벌한다.

<신 설>

-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 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아니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 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 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 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 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 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1.•2. (현행과 같음)
② <u>정보통</u>
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
<u>ठो-व</u>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에 대한 조치 등) ①
<u>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u>
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
<u>고 아동·청소년</u>
② <u>청</u>
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
한 경우 지체 없이
<u>성착</u>
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1. (생략)
-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 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 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 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 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의

<u>.</u>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1. (현행과 같음)
2성착취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제45조(보호시설)
1 /구의 기 기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보호 • 자립지원

-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성매매</u> <u>피해아동·청소년</u>의 다른 기 관과의 연계 및 위탁
-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생 략)
  -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과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 3. 그 밖에 <u>아동·청소년 성매</u> <u>매</u>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생 략)
-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 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 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 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3 <u>성착취</u> 피해아동·청소년
 제46조(상담시설) ①
 3 <u>아동·청소년 성착</u>
<u>취</u>
제47조의2( <u>성착취 피해아동·청</u> <u>소년 지원센터</u> 의 설치) ①
<u>성착취</u> 피해아동·청소 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 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u>지원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 1. <u>제12조부터 제15조까지</u>의 범 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 담
-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교육·상담 및 지원
-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 4.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 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 5.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 육·상담프로그램 운영
- 6.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에 관한 조사·연구
- 7. 그 밖에 성매매 피해아동・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
원센터
② <u>성착취</u>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4.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5.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6. <u>아동·청소년 성착취</u>
7 시키키 코페시드
7성착취 피해아동・

<u>청소년</u>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④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 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한다)로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하는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이하같다)로 기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경우에는그형이 확정된날)부터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u>청소년</u>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에의 취급세인 5) ①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 9. (생략)
-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u>성매</u> <u>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u> <u>터</u>
- 10. ~ 25. (생략)
- ② ~ ⑨ (생 략)
-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저 확인) ① · ② (생 략)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

1 0 (원레기 기수)
1. ~ 9. (현행과 같음) 9의2성착
9年2. ————————————————————————————————————
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
<u>터</u>
10. ~ 2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ll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 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 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 5. (생략)
-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 문기관 및 <u>성매매 피해아동</u>· 청소년 지원센터
- 6. ~ 17. (생략)
- ④ ~ ⑥ (생 략)

<u>.</u>
1. ~ 5. (현행과 같음)
5의2
<u>성착취 피해아동·</u>
청소년 지원센터
6.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